

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-13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」 제4조(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2) 추진 필요성

-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, 노인 등에게 건강과 복지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업무 효율성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및 관리

- 1) 복지목욕탕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2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될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설명: 마포복지목욕탕
- 2) 위치: 마포구 월드컵로 205(성산동)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24호
- 3) 시설규모: 면적 455.85㎡(전용 299.04㎡, 공용 156.82㎡)
- 4) 임대: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무상 임대사용(2009.1.6.~현재)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 5. 1. ~ 2025. 4. 30.(2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소요예산 : 258,084천원
- 2) 산출근거 [2023년 최저임금 및 시설 소요예산 반영]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258,084		
마포복지목욕탕 운영	258,084	- 인건비 118,854천 원 - 운영비 108,730천 원 - 시설비 30,500천 원	구비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지역사회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립 목욕시설을 운영하고자 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1) '22. 12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
- 2) '22. 1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
- 3) '23. 2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4) '23. 5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」

제2조(설치 및 명칭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(이하 "목욕탕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5(성산동)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한다. <개정 2014.10.16>
- ② 목욕탕 명칭은 "마포복지목욕탕"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

- ① 목욕탕 운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한다.
- ② 구청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16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